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① 영 제77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u>별표 1과 같다.</u></p> <p>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u>별표 2와 같다.</u></p> <p>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u>별표 3과 같다.</u></p>	<p>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u>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p> <p>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p> <p>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p> <p>② &lt;삭 제&gt;</p> <p>③ &lt;삭 제&gt;</p>	<p>○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 1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재분류</p>
<p>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lt;생 략&gt;</p> <p>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u>별표 1에서부터 별표 3</u>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p> <p>③ &lt;생 략&gt;</p>	<p>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u>별표 1</u>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 제3조 개정에 따라 별표 2, 3 삭제 수정, 규제심사 비대상</p>
<p>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u>제3조제1항</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u>제3조제1호</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 ④ &lt;생략&gt;</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⑥ ~ ⑧ &lt;생략&gt;</p>	<p>②~ ④ &lt;현행과 같음&gt;</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u>형식기호 표시 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⑥ ~ ⑧ &lt;생략&gt;</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u>제3조 제2항 및 제3항</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lt;생략&gt;</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3조제2항</u>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u>제3조제2호 및 제3호</u>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3조제2호</u>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u>형식기호 표시 방법</u>은 별표 7과 같다.</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p> <p>① &lt;생략&gt;</p> <p>1. &lt;생략&gt;</p> <p>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u>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2와 별표 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u>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p> <p>①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u>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u>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다. &lt;생략&gt; 라. 자기 시험성적서 (<a href="#">제3조제3항</a>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마. &lt;생략&gt;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a href="#">제3조제2항</a>에 따른 <a href="#">별표 2의 제3호</a>부터 <a href="#">제5호</a>까지, <a href="#">제6호</a> 라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p> <p>4.~5. &lt;생략&gt;</p> <p>6. 회로도 : 다만, <a href="#">제3조 제2항</a> 및 <a href="#">제3항</a>에 따른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a href="#">있으며</a>,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단, <a href="#">별표 2</a> 및 <a href="#">별표 3의 단말기기류</a>는 비치서류에 <a href="#">제5조제1항제6호</a>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a href="#">포함하여</a> 비치한다.)</p> <p>7.~8. &lt;생략&gt; ② ~ ③ &lt;생략&gt;</p>	<p>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다. &lt;현행과 같음&gt; 라. 자기 시험성적서(<a href="#">제3조제3호</a>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마. &lt;현행과 같음&gt;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a href="#">제3조제2호</a>에 따른 <a href="#">별표 1의 제11호</a> 다목, 라목, 자목[1~32)까지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p> <p>4.~5. &lt;현행과 같음&gt;</p> <p>6. 회로도 : 다만, <a href="#">제3조제2호</a> 및 <a href="#">제3호</a>에 따른 <a href="#">적합등록</a>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a href="#">있다</a>.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a href="#">회로도를</a> 생략할 수 있다.(단, <a href="#">별표 1의 제7호</a>, <a href="#">제8호</a>, <a href="#">제10호</a>에 해당하는 <a href="#">적합등록 대상기자재</a>는 비치서류에 <a href="#">제5조제1항제6호</a>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비치한다.)</p> <p>7.~8. &lt;현행과 같음&gt; ② ~ ③ &lt;현행과 같음&gt;</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 적합등록자가 비치해야 할 서류 중 생략할 서류 범위를 확대 - 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을 구성품으로 장착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lt;생 략&gt;</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u></p>	<p>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u>기기부호는 별 표 1과 같고</u>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제15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p> <p>① ~ ② &lt;생 략&gt;</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 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 로 볼 수 있다.</p> <p>1.~4. &lt;생 략&gt;</p> <p>5. <u>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2 제6호 다목)</u> 중 적합성 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p> <p>④ &lt;생 략&gt;</p>	<p>제15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p> <p>① ~ 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 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 로 볼 수 있다.</p> <p>1.~4. &lt;현행과 같음&gt;</p> <p>5. <u>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u> 중 적합 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p> <p>④ &lt;현행과 같음&gt;</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p>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lt;생 략&gt;</p> <p>1.~2. &lt;생 략&gt;</p> <p>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u>별표 2 제6호 다목</u>)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 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p>	<p>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lt;생 략&gt;</p> <p>1.~2. &lt;현행과 같음&gt;</p> <p>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u>별표 1 제11호 자목 35</u>)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u>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 ④ &lt;생 략&gt;</p>	<p>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각 호의 구성품에 한해</u>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u>제3호를 제외한</u>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전자파흡수율 및 전자파강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u></p> <p>2. <u>적합성평가를 받은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장착한 기자재</u></p> <p>3. <u>적합성평가를 받은 ‘완구용 모터’를 장착한 완구제품 (다만, 별도의 능동회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② ~ ④ &lt;현행과 같음&gt;</p>	<p>○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제출 등을 간소화하도록 규제 완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b>적합인증 대상기자재</b>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b>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b> (제3조 관련)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1. 무선전화정보 자동수신기		가.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화성기가 동작하는 것	○	○					○			SA		별표1 제10호 가목
		나.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			SB		별표1 제10호 나목
		다. 무선전화정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화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			MR		별표1 제13호 가목
									○			HR		별표1 제13호 나목
									○			VR		별표1 제13호 다목
2. 무선방위 측정기		가. 의무 비치용	○	○					○			SN		별표1 제11호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고풍무선방위 측정기												
		나. 임의 비치용	○	○					○			SH		별표1 제12호 가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SV		별표1 제12호 나목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고풍무선방위 측정기										SRRT		별표1 제15호 가목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SRAIS		별표1 제15호 나목
4. 정보자동전화장치			○	○					○			NR		별표1 제14호
5. 단축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	○					○			SD		별표1 제16호 가목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E		별표1 제16호 나목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가.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	○					○			SA		별표1 제10호 가목
		2) 해안국용	○	○					○			SB		별표1 제10호 나목
		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	○					○			MR		별표1 제13호 가목
		2) MF·HF전용수신기	○	○					○			HR		별표1 제13호 나목
		3) VHF전용수신기	○	○					○			VR		별표1 제13호 다목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SN		별표1 제11호
		라.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	○					○			SH		별표1 제12호 가목
		1) MF·HF송수신장치										SV		별표1 제12호 나목
		2) VHF송수신장치												
		마.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 장치의 기기	○	○					○			SRRT		별표1 제15호 가목
		1)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												
		2)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			SRAIS		별표1 제15호 나목
		바. 네비텍스수신기	○	○					○			NR		별표1 제14호
		사.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SD		별표1 제16호 가목
		1)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SE		별표1 제16호 나목
		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가. 국제 항해용 레이더	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 이상	○	○												VA1	별표1 제7호															
		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 이상 32cm 미만														VA2	별표1 제8호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 이상 25cm 미만														VA3	별표1 제9호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	○													S	별표1 제5호 다목 - 문구 간략화															
	다. 국내소형선박용 레이더	○	○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별표1 제4호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별표1 제1호 가목 - 문구 간략화														
10.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가. 선박국용		○	○														별표1 제1호 나목 - 문구 간략화														
	나. 해안국용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별표1 제1호 다목 - 문구 간략화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가. MF·HF송수신장치		○	○																												
	나. VHF송수신장치																	별표1 제6호 가목 1)														
13.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가. MF전용수신기		○	○														RAM	별표1 제6호 가목 2)													
	나. MF·HF전용수신기																															
	다. VHF전용수신기																															
14. 네비텍스수신기			○	○																												
15. 수색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ponder		○	○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16.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의 기기	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17.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	○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아.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자.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차.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카. 단축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다. 경보자동전화장치			○	○																												
파. 무선전화경보 자동수신기	1) 확성기 동작형		○	○														별표1 제1호 가목 - 문구 간략화														
	2) 가청경보기 동작형		○	○														별표1 제1호 나목 - 문구 간략화														
	3)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 동작형		○	○														별표1 제1호 다목 - 문구 간략화														
하.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1) 국제 항해용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 이상	○	○														별표1 제6호 가목 1)														
		나)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 이상 32cm 미만	○	○														별표1 제6호 가목 2)														
		다)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 이상 25cm 미만	○	○														별표1 제6호 가목 3)														
2) 국내 항해용			○	○														별표1 제6호 나목														
3) 국내 소형선박용			○	○														별표1 제6호 다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18.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일반업무용	○	○		○								○			DA		별표1 제2호 가목 1)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DB		별표1 제2호 가목 2)	
19.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의 기기			○										○			DC		별표1 제2호 가목 3)	
20. 라디오부이의 기기			○										○			DAA		별표1 제2호 나목 1)	
2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			DBB		별표1 제2호 나목 2)	
2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DCA		별표1 제2호 나목 3)	
23.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B		별표1 제20호	
2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AIS1		별표1 제17호 가목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AIS2		별표1 제17호 나목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25. LI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A		별표1 제3호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SSS		별표1 제5호 가목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마. 기 타		○	○										○						
25. LI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마. 기 타		○	○										○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A		별표1 제3호
나.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기기		○	○						○			SSS		별표1 제5호 가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비고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2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SRG	별표1 제18호 가목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SRA	별표1 제18호 나목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2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 기 타	○	○														
2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29.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가. 육상용	○	○		○												
	나. 해상용	○	○		○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32.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3.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 인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일반업무용	○	○		○				○				SRG	별표1 제18호 가목			
	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SRA	별표1 제18호 나목			
나.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RLS	별표1 제30호			
다.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1	별표1 제21호를 분리			
라. 단축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SS	별표1 제5호 나목 - 문구 간략화			
마.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1) 라디오존데 기기		○						○				P1	별표1 제19호를 분리			
	2) 라디오로보트 기기		○						○				P2	별표1 제19호를 분리			
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1	별표1 제23호			
사. 주파수공용 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				CCCA1	별표1 제31호 가목 - 기준 조항 제목으로 수정			
	2) 해상용	○	○		○				○				CCCA2	별표1 제31호 나목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 송·수신기기	○	○						○				CCCA	별표1 제31호 다목 - 기기부호 수정			
아.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PMSE	별표1 제38호			
자.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2	별표1 제21호를 분리			
차.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V3	별표1 제21호를 분리			
카.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1)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				IPN	별표1 제53호 가목			
	2)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				IPN1	별표1 제53호 나목			
	3)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PN4	별표1 제53호 다목			
	4) 기 타	○	○						○				IPN9	별표1 제53호 라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부호	기타 사항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34. <del>이차전지</del> 무선광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HF대 기기	○	○																				
							나. VHF/UHF대 기기 등	○	○																				
35.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36.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7.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38.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9. 자체유도식 무선기기								○	○																				
4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1.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바. 중계용 무선기기	○	○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차.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p>※ 비고</p> <p>○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p>																						
							<p>파.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p> <p>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p> <p>2)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p>																						
							<p>다.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p>																						
							<p>ITS1</p>																						
							<p>ITS2</p>																						
							<p>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에 해당</p>																						
							<p>SAR 대상기자재를 명확화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p>																						
							<p>별표1 제54호</p>																						
							<p>별표1 제55호 가목</p>																						
							<p>별표1 제55호 나목 - 설명문구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43. RFID / USN용 무선기기	가. RFID용 무선기기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나. USN용 무선기기	○	○		○												
44.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4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가.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다. 5.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6. 코드를 읽는 전화기	가.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	○												
	나.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7. UWB 및 응용마지막 기기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나. 용도미지정 기기																
48. 단말기 종류	가. 무선 모뎀	○	○	○													
	나.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마.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바.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종류																
49. 시스템류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														
	나. 데이터교환기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라. 구내교환기(PBX)																
	마. ATM교환기																
	바. 키폰시스템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MCA	별표1 제24호 가목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MCA1	별표1 제24호 나목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A2	별표1 제24호 다목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MCA4	별표1 제24호 라목
	5) 기타	○	○				○			MCA9	별표1 제24호 마목
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PCS	별표1 제26호 가목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PCS1	별표1 제26호 나목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PCS2	별표1 제26호 다목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PCS4	별표1 제26호 라목
	5) 기타	○	○				○			PCS9	별표1 제26호 마목
다.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		○			IMT	별표1 제27호 가목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			IMT1	별표1 제27호 나목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IMT2	별표1 제27호 다목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			IMT4	별표1 제27호 라목
	5) 기타	○	○				○			IMT9	별표1 제27호 마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50. 회선종단 장치류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	○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	○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	○															
	차.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 미디어 서버	○	○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										LTE				별표1 제25호 가목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LTE1				별표1 제25호 나목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LTE2				별표1 제25호 다목	
5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										LTE4				별표1 제25호 라목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LTE9				별표1 제25호 마목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IOT				별표1 제25호 LTE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서 분리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IOT1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IOT2					
	사. PCM단국장치	○	○										IOT4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	○	○										IOT9						
5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가. 진폭변조기	○	○															
	나. 주파수변조기	○	○															
	다.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5) 기타		○	○															
마.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	○															
	2)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3)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5) 기타	○	○															
바.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3) 기 타	○	○															
사.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1)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2)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3) 기 타	○	○															

현행						개정안										비고	
52. 방송공동수신설비류	가. 증폭기	○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나. 레벨조정기	○	○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라. 광증폭기	○	○				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ERT		별표1 제36호
	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				자.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CA2		별표1 제23호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	○				차.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GMPCS		별표1 제29호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카.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DATA		별표1 제28호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다.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육상용	○	○			○				CCCA4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	○			2) 해상용	○		○			○			CCCA5	별표1 제31호 나목을 분리		
차.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			3)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		○			○			CCCA6	별표1 제31호 다목을 분리		
5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파.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MCP	별표1 제33호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WIBRO	별표1 제40호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LBS	별표1 제41호		
	라. 기 타	○	○			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대역	○	○			○			WLL1	별표1 제35호 가목	
54.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2)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대역		○	○			○			WLL2	별표1 제35호 나목		
55.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	○			※ 비고											
	나.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기자재는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방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56. TVWS 테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고정형 기기	○	○														
	나. 이동형 기기	○	○														
57.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														
	나.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	○														
58.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기 타	○	○														

현행							개정안										비고																																																																																																																																																																																													
5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b>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b>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기 타	○	○																																																																																																																																																																																																											
※ 비고 1. 제42호 나목 및 아목, 제43호, 제45호의 기자재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의 포장 또는 사용자 설명서 일면에 다음의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대상기자재</th> <th colspan="5">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th> <th colspan="3">적합성평가 유형</th> <th rowspan="3">기기 부호</th> <th rowspan="3">기타 사항</th> </tr> <tr> <th rowspan="2">전자파 적합성</th> <th rowspan="2">무선</th> <th rowspan="2">유선</th> <th colspan="2">전자파 인체보호</th> <th rowspan="2">적합인증</th> <th colspan="2">적합등록</th> </tr> <tr> <th>전자파 흡수율</th> <th>전자파 강도</th> <th>지정시험기관</th> <th>자기시험</th> </tr> </thead> <tbody> <tr> <td>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CB</td> <td></td> </tr> <tr> <td>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PD</td> <td></td> </tr> <tr> <td>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IMD</td> <td></td> </tr> <tr> <td rowspan="12">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td> <td>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1</td> <td></td> </tr> <tr> <td>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2</td> <td></td> </tr> <tr> <td>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3</td> <td></td> </tr> <tr> <td>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4</td> <td></td> </tr> <tr> <td>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5</td> <td></td> </tr> <tr> <td>6) 중계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6</td> <td></td> </tr> <tr> <td>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7</td> <td></td> </tr> <tr> <td>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8</td> <td></td> </tr> <tr> <td>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LARN9</td> <td></td> </tr> <tr> <td>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FTC</td> <td></td> </tr> <tr> <td>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RDR</td> <td></td> </tr> <tr> <td>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ITS3</td> <td>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td> </tr> </tbody> </table>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5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	○					○		ITS3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별표1 제32호  별표2 제9호 별표1 제39호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42호 가목 별표1 제42호 나목 별표1 제42호 다목 별표1 제42호 라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42호 마목 별표1 제42호 바목 별표1 제42호 사목 별표1 제42호 아목 별표1 제42호 자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42호 차목 별표1 제42호 카목 별표1 제55호 나목 2)를 분리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CB																																																																																																																																																																																																					
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LPD																																																																																																																																																																																																					
다.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IMD																																																																																																																																																																																																					
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		LARN1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2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		LARN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	LARN4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5																																																																																																																																																																																																				
	6) 중계용 무선기기	○	○					○		LARN6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		LARN7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		LARN8																																																																																																																																																																																																				
	9)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	LARN9																																																																																																																																																																																																				
	10)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		FTC																																																																																																																																																																																																				
	11)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	○					○		RDR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	○					○		ITS3	10mW/MHz 이하의 기기만 해당																																																																																																																																																																																																			

현 행	개정안	비 고
-----	-----	-----

[별표 2]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SAR	전자파강 도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외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이용설비는 제외)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마. RFID용 무선기기	1) 900MHz 주파수 대역	○	○		○				RFID1	
	2) 433MHz 주파수 대역	○	○				○		RFID2	
	3) 13.56MHz 주파수 대역	○	○				○		RFID3	
바. USN용 무선기기	1) 917MHz ~ 923.5MHz 주파수 대역	○	○				○		USN1	
	2) 940.1MHz ~ 946.3MHz 주파수 대역	○	○				○		USN2	
	3) 1.7GHz 주파수 대역	○	○				○		USN3	
사. 코드없는 전화기	1) 1.7GHz 주파수 대역	○	○	○	○		○		DCP17	
	2) 2.4GHz 주파수 대역	○	○	○	○		○		DCP24	
아.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UWB1	
자.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1) 262MHz ~ 264MHz 주파수 대역	○	○				○		FACS2	
	2) 22GHz ~ 23.6GHz 주파수 대역	○	○				○		FACS3	
	3) 57GHz ~ 66GHz 주파수 대역	○	○				○		FACS1	
	4) 122GHz ~ 123GHz 주파수 대역	○	○				○		FACS4	
	5) 244GHz ~ 246GHz 주파수 대역	○	○				○		FACS5	

별표1 제43호 가목을 분리

별표1 제43호 가목을 분리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

별표1 제43호 나목을 분리

"

"

별표1 제46호 가목  
- 문구 간략화

별표1 제46호 나목  
- 문구 간략화

별표1 제47호 가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47호 나목  
- 주파수대역별로 분리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

"

"

"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																				별표1 제50호 가목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별표1 제50호 나목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																					별표1 제50호 다목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																						별표1 제50호 라목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전동기기	1) 주서	○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방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함)																																											
나. 회선종단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별표1 제50호 가목																		
	2)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		○							○																별표1 제50호 나목																	
	3)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																	별표1 제50호 다목																
	4)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																	별표1 제50호 라목																
	5)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																	별표1 제50호 마목																
	6)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																		별표1 제50호 바목															
	7) PCM단국장치	○		○							○																		별표1 제50호 사목															
	8)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							○																		별표1 제50호 아목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별표1 제48호 나목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별표1 제48호 바목 - 문구 현행화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별표1 제48호 다목																
	4)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																	별표2 제14호 가목																
	5)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 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																	별표2 제14호 나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너. 가정용 전동세탁기		○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버. 전기맛사지기		○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1) 냉방기	○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	1) 유체펌프	○																
	2) 전기온수펌프																	
저. <삭 제>																		
처.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 사우나기기	○																
	2) 전기사우나기기																	
6)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 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 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별표2 제14호 다목
7)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 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별표2 제14호 라목
8) 영상전화기		○																별표2 제14호 마목
9)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휴모드메이선, 비디오통화폰 등)		○																별표2 제14호 바목
10)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별표2 제14호 사목
11)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카드식 포함)		○																별표2 제14호 아목
12)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카드식 포함)		○																별표2 제14호 자목
13) 팩시밀리 모뎀 (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별표2 제14호 차목
14)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별표2 제14호 카목
15)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별표2 제14호 타목
16)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별표2 제14호 파목
17)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별표2 제14호 하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조.<삭 제>																					
초.<삭 제>																					
코.<삭 제>																					
토.<삭 제>																					
포.<삭 제>																					
호. 전기용해기	1) 왁스용해기	○																			
	2) 초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삭 제>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삭 제>																					
루.<삭 제>																					
두.<삭 제>																					
루.<삭 제>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1) 전기이발용의자	○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수.<삭 제>																					
우. 전기온수매트	1) 전기보일러	○																			
	2)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32) 접속 커넥터																					
33)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34)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b>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b>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1) 진폭변조기																				
	2) 주파수변조기																				
	3)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4)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별표3 제4호 가목 1)																					
별표2 제3호 라목 등에서 분리 - 단말장치 기준고시 제1533 신설(2018.8.7.)에 따라 대상 분리																					
별표1 제48호 사목 별표2 제4호 커목																					
별표1 제51호 가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1호 나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1호 다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1호 라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1호 마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48호 마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기										비고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주. 구강청결기	1) 진동칫솔 2) 구강세척기	○																							
추. <삭 제>																									
쿠. <삭 제>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2) 전기포충기	○																							
푸. 전기집진기		○																							
후. 착유기		○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컨		○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기	○																							
	2) 운전시뮬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롤스크린		○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삭 제>																									
즈. 보습제거기		○																							
즈. 산소이온발생기		○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																							
	2) 전기이온수기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비고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비고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SAR	전자파강도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가. 증폭기		○																							
나. 레벨조정기		○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라. 광 증폭기		○																							
마. 신호처리기		○																							
바. 분기기																									
사. 분배기																									
아. 동축케이블																									
자. 보호기																									
차. 가입자보호기(CATV)																									
카. 광분배기																									
타. 광케이블																									
파. 직렬단자																									
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별표1 제48호 라목

별표1 제52호 가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2호 나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2호 다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2호 라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1 제52호 마목  
- 별표1 제52호 마~자 통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별표3 제4호 가목 2)  
별표3 제4호 가목 3)  
별표3 제4호 가목 4)  
별표3 제4호 가목 5)  
별표3 제4호 가목 6)  
별표3 제4호 가목 7)  
별표3 제4호 가목 8)  
별표3 제4호 가목 9)  
별표1 제52호 차목  
- 인증 → 등록으로 분류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5. <b>형광등 등 조명기기류</b> : 9kHz부터 400k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												CLN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별표2 제4호 가목 - 별표3 제12호 나목을 개별적으로 표현 - 세부분류 통합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													MW0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별표2 제4호 라목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kW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 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로믹스 튜리용 조명기구	○													KTC11	전동기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별표2 제4호 아목 - 별표3 제12호 나목을 개별적으로 표현 - 세부분류 통합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 (램프)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땀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콘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											
							7)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집, 전기깎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 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b>※ 비고</b> 1.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마. 카메라 렌즈 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2. 제4호 또는 제7호의 기자재 중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4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5호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1		별표2 제4호 디목 - 세부분류 통합			
53) 전기가열기기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WDM11		별표3 제7호 가목 - 세부분류 통합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AQU11		별표3 제7호 나목 - 세부분류 통합			
55) 기포발생기	○										○	BBL11		별표3 제7호 다목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BLD11		별표3 제7호 라목			
57) 전기분무기	○										○	MST11		별표3 제7호 마목			
58) 전기소독기	○										○			별표3 제7호 바목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ROL11		별표3 제7호 사목 - 세부분류 통합			
60) 과일껍질칼라기	○										○			별표3 제7호 아목			
61) 감자탈피기	○										○	KCN11		별표3 제7호 자목			
62) 전기정미기	○										○			별표3 제7호 차목			
63) 전기빵자르개	○										○			별표3 제7호 카목			
64) 애완동물 목욕기	○										○	POL11		별표3 제7호 타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	-----

[별표 3]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강도
<b>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b>	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장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b>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b>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 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가. 산업용컴퓨터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b>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b>	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
65) 전기주류속성기	○						○	ELD11		
66) 전기시계	○						○	WAT21		
67) 컴프레서	○						○	COM11		
68) 전기분수기	○						○	WTP1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C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기	○						○	WTR1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I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1		
73) 기타 1)부터 50)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HOU98		
74) 기타 53)부터 72)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	○						○	HOU99		
<b>라. 조명기기류</b> : 9kHz부터 400 kHz까지 주파수 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기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 조명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 장치 [자기식안정기, 전자식 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안정기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별표3 제7호 과목  
별표3 제7호 하목  
별표3 제7호 거목  
별표3 제7호 너목  
  
별표3 제7호 더목  
- 세부분류 통합  
  
별표3 제7호 러목  
별표3 제7호 머목  
별표3 제7호 버목  
별표2 제4호 기목  
  
별표3 제7호 서목  
  
별표2 제5호 가목  
  
별표2 제5호 나목  
  
별표2 제5호 다목  
  
별표2 제5호 라목  
- 지정시험 → 자기시험으로 분류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 수신 설비	1) 접속 커넥터			○																																																								
		2) 분기기			○								○	TRA11				별표3 제5호																																											
		3) 분배기			○																																																								
		4) 동축케이블			○																																																								
		5) 보호기			○								○		LIN				별표2 제8호																																										
		6) 가입자보호기(CATV)			○																																																								
		7) 광분배기			○																																																								
		8) 광케이블			○																																																								
		9) 직렬단자			○																																																								
	나.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		○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사. 무정전 전원장치												○		IMO11	정격용량이 10kV 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 등록 대상			별표2 제6호 라목 1)																																									
	다. 단말기기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		○																																																								
																						나.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다. 단말기기류	○		○																
		1) 텔레비전수상기	○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2) 영상모니터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4) 비디오카메라			○																																																										
5) 튜너			○																																																										
6) 편집기			○																																																										
7) 디스크플레이어	○																																																												
8) 라디오수신기	○																																																												
9) 앰프(앰프내장형스피커 포함)	○																																																												
10) 리시버	○																																																												
11) 음성기록계	○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합성	무선	유선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 인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별표2 제3호 타목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별표2 제3호 파목		
7.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가. 전기가열기기	1) 납땜인두	○														별표2 제3호 하목		
		2) 납땜제거인두															별표2 제3호 거목		
		3) 권총형납땜기																별표2 제3호 너목	
		4) 열가소성도관용접기																별표2 제3호 더목	
		5) 필름접착기																별표2 제3호 러목	
		6) 플라스틱절단기																별표2 제3호 머목	
		7) 페인트제거기																별표2 제3호 버목	
		8) 가열총																별표2 제3호 서목	
		9) 전기조각기																	별표2 제3호 어목
	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1)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별표2 제3호 저목	
		2)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별표2 제3호 처목	
		3)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별표2 제3호 커목	
		4) 관상용 전기어항																별표2 제3호 터목	
	다. 기포발생기기	○															별표2 제3호 퍼목		
	라. 전격살충기 (기계가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별표2 제3호 허목	
	마. 전기분무기	○																별표2 제3호 고목	
	바. 전기소독기	○																별표2 제3호 노목	
	사. 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1) 물수건포장기	○																별표2 제3호 도목
		2) 물수건마는기기																	별표2 제3호 로목
	아. 과일껍질깎기	○																별표2 제6호 가목	
자. 감자탈피기	○																		
차. 전기정미기	○																		
카. 전기빵자르개	○																		
기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은 대상에서 제외)	12) 음성플레이어	○																	
	13) 오디오시스템	○																	
	14) 전자악기	○																	
	15) 위성방송수신기	○												STB11					
	16) 비디오게임기구	○																	
	17) 비디오폰	○													VDO21				
	18) TV영상프로젝터	○																	
	19) 음질조절기 (이퀄라이저 포함)	○																	
	20) 오디오프로세서	○																	
	21) 신호변환장치(AD/DA)	○													AUD21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23) 컴프레서 게이트	○																	
	24) 전자시계	○														WAT11			
	25) CCTV 카메라	○																	
	26) 영상전송기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28) 영상기록계	○																	
	29) A/V 신호수신기	○																	
	30) 영상프로세서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32) 턴테이블	○																	
	33) 컴퓨터류	○														IMC11			
	34) 컴퓨터 주변기기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IMA		별표2 제6호 나목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IMI		별표2 제6호 다목	
																		별표2 제6호 마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SAR	전자파 강도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8.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타. 애완동물 목욕기	○											○		IMI61	별표2 제6호 라목 2)-16)			
	파. 전기주류숙성기	○																	
	하. 전기시계	○																	
	거. 컵프레서	○																	
	너. 전기분수기	○																	
	더. 투영기	1) 슬라이드 투영기	○											○			IMO		
		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러. 수도동결방지	○																	
머.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버. 전기작동도어록	○																		
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9.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가. 전자식스위치 <단서 삭제>	○																	
	나. 리모트콘트롤스위치																		
	다. 시간지연스위치																		
	라. 조광기																		
	마. 전자개폐기 <단서 삭제>																		
	바. 온도조절기 (전자식에 한함)																		
	사.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																	
	11. 절연변압기	가.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1) 전압조정기	○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나. 전기용접기	1) 전기용접기	○																	
			2) 총형아크접착기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												
	36) 기타 정보기기류																		
	37) 사무기기류 (코딩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39)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기																		
	41) 기타 이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1) 누전경보기(수신부)																		
	2) 가스누설경보기																		
3) 수신기																			



현 행	개정안	비 고
-----	-----	-----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무선전화경보자동 수신기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WA 나. 무선전화경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정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WB 다.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정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WC	
2. 무선방위측정기	가. 의무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
	3) 고풍무선방위 측정기	DC
	나. 임의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DAA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DBB	
3) 고풍무선방위 측정기	DCA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A	
4. 경보자동전화장치	T	
5.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SSS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SS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S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가. 국제항해용 레이더	
	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이상	RAL
	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2cm미만	RAM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RAS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RC
다. 국내 소형선박용 레이더	RD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VA1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VA2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VA3	
10.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가. 선박국용 SA 나. 해안국용 SB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SN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가. MF·HF송수신장치	SH
	나. VHF송수신장치	SV
	가. MF전용수신기	MR
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나. MF·HF전용수신기	HR
	다. VHF전용수신기	VR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 장치)	○						○	LIM21	별표3 제3호
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						○	AVR11	별표3 제11호 가목
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류	○						○	HVT11	별표3 제6호
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	○						○	CBL11	별표3 제9호와 제10호를 통합 - 대상 구분 명확화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에 준하는 기기로서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						○	EXP11	별표2 제19호
너.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	REC	별표3 제12호 가목과 나목 일부 통합
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UBD	별표3 다목
<p>※ 비 고</p> <p>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자기시험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p> <p>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마.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p>									

별표3 제3호

별표3 제11호 가목

별표3 제6호

별표3 제9호와 제10호를 통합  
- 대상 구분 명확화

별표2 제19호

별표3 제12호 가목과 나목 일부 통합

별표3 다목

별표2 제4호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단서 규정을 이동

별표3 제2호 다목 일부의 과학용을 제외

별표2 비고 제2호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인증	적합등록		
14. 네비텍스수신기			NR								
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SRRT SRAIS									
16.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SD SE									
17.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AIS1 AIS2									
18.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일반업무용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RG SRA									
19.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의 기기		P									
20. 라디오부이의 기기		B									
2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국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V									
2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H									
23.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A									
2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MCA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MCA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MCA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MCA4									
	마. 기 타	MCA9									
2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LTE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LTE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LTE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LTE4									
	마. 기 타	LTE9									
2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PCS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PCS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PCS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PCS4									
	마. 기 타	PCS9									
2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MT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MT1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2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MT4									
	마. 기 타	IMT9									
2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DATA									
29.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GMPCS									
3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RLS									
3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가. 육상용	CCCA1									
	나. 해상용	CCCA2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기기	CCCA									
32.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CB									
33.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MCP									

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계측기, 디지털음속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가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6. 「전자파」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모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별표2 비고 제1호 가목  
별표2 비고 제1호 다목  
별표2 비고 제3호  
별표2 비고 제2호  
별표2 비고 제4호  
별표3 비고  
전파법에 따라 면제되는 대상기자재를 설명하여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34.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HF대 기기	HAM1		
	나. VHF/UHF대 기기 등	HAM2		
35.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1		
	나.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WLL2		
36.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ERT		
37.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1		
	나.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CATV2		
38.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PMSE		
39.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IMD		
40.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WIBRO		
41.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LBS		
42. 특성소출력 무선기기	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LARN1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ARN2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3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LARN4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5		
	바. 중계용 무선기기	LARN6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LARN7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ARN8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LARN9		
	차.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FTC		
43. RFID/USN용 무선기 기	카.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	RDR		
	가. 900MHz 대역 사용 RFID 기기	RFID1		
	나. 433MHz 대역 사용 RFID 기기	RFID2		
	다. 13.56MHz 대역 사용 RFID 기기	RFID3		
	라. 917MHz~923.5MHz 대역 사용 USN 기기	USN1		
	마. 940.1MHz~946.3MHz 대역 사용 USN 기기	USN2		
	바. 1.7GHz 대역 사용 USN 기기	USN3		
4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 기	400M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MICS4		
4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가.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24		
	나. 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10		
	다. 5.8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5		
46. 코드없는 전화기	가.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17		
	나.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24		
47.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나. 57~66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1		
	다. 262~264M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2		
	라. 24~27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3		
	마. 122~123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4		
48. 단말기기류	바. 244~246GHz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5		
	가. 무선모뎀	A26		
	나.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교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A43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기자재</th> <th>기기부호</th> </tr> </thead> <tbody> <tr> <td>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td> <td>A44</td> </tr> <tr> <td>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td> <td>A83</td> </tr> <tr> <td>마.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td> <td>A84</td> </tr> <tr> <td>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td> <td>A85</td> </tr> <tr> <td>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td> <td>A98</td> </tr> </tbody> </table>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A83	마.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A84	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A85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A98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다.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A44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A83																												
마.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EPON, GPON, 광모뎀 등)	A84																												
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A85																												
사. 이와 유사한 단말기기류	A98																												
49. 시스템류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td> <td>B11</td> </tr> <tr> <td>나. 데이터교환기</td> <td>B12</td> </tr> <tr> <td>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td> <td>B13</td> </tr> <tr> <td>라. 구내교환기(PBX)</td> <td>B14</td> </tr> <tr> <td>마. ATM교환기</td> <td>B15</td> </tr> <tr> <td>바. 키폰시스템</td> <td>B21</td> </tr> <tr> <td>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td> <td>B31</td> </tr> <tr> <td>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td> <td>B41</td> </tr> <tr> <td>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td> <td>B42</td> </tr> <tr> <td>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td> <td>B43</td> </tr> <tr> <td>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td> <td>B51</td> </tr> <tr> <td>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td> <td>B52</td> </tr> <tr> <td>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td> <td>B99</td> </tr> </tbody> </table>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B11	나. 데이터교환기	B12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B13	라. 구내교환기(PBX)	B14	마. ATM교환기	B15	바. 키폰시스템	B21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B31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B41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B42	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B43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B51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B52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B99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B11																												
나. 데이터교환기	B12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B13																												
라. 구내교환기(PBX)	B14																												
마. ATM교환기	B15																												
바. 키폰시스템	B21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B31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B41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B42																												
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B43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B51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B52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B99																												
50. 회선종단장치류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td> <td>C11</td> </tr> <tr> <td>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td> <td>C12</td> </tr> <tr> <td>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td> <td>C13</td> </tr> <tr> <td>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td> <td>C14</td> </tr> <tr> <td>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td> <td>C21</td> </tr> <tr> <td>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td> <td>C31</td> </tr> <tr> <td>사. PCM단국장치</td> <td>C41</td> </tr> <tr> <td>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td> <td>C99</td> </tr> </tbody> </table>	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C11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C12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C13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C14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C21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C31	사. PCM단국장치	C41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C99												
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C11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통신장치	C12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C13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C14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C21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C31																												
사. PCM단국장치	C41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C99																												
5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 장치류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진폭변조기</td> <td>D11</td> </tr> <tr> <td>나. 주파수변조기</td> <td>D12</td> </tr> <tr> <td>다. 디지털변조기(64QAM, 256QAM, QPSK)</td> <td>D13</td> </tr> <tr> <td>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td> <td>D14</td> </tr> <tr> <td>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td> <td>D88</td> </tr> </tbody> </table>	가. 진폭변조기	D11	나. 주파수변조기	D12	다. 디지털변조기(64QAM, 256QAM, QPSK)	D13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D14	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D88																		
가. 진폭변조기	D11																												
나. 주파수변조기	D12																												
다. 디지털변조기(64QAM, 256QAM, QPSK)	D13																												
라.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아날로그방식,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D14																												
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D88																												
52. 방송공동수신설비류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증폭기</td> <td>D21</td> </tr> <tr> <td>나. 레벨조정기</td> <td>D31</td> </tr> <tr> <td>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td> <td>D33</td> </tr> <tr> <td>라. 광 증폭기</td> <td>D34</td> </tr> </tbody> </table>	가. 증폭기	D21	나. 레벨조정기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D33	라. 광 증폭기	D34																				
가. 증폭기	D21																												
나. 레벨조정기	D31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D33																												
라. 광 증폭기	D34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	-----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마. 디지털 제변조형 주파수변환기	D32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D35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E41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	E42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E43
	차.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D99
53. 통합공공방송 무선설비	가. 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PN
	나. 육상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IPN1
	다.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IPN4
	라. 기타	IPN9
54.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MOB
55.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ITS1
	나.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ITS2
56.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고정형 기기	TVWS1
	나. 이동형 기기	TVWS2
57. 레벨측정 레이더용 무선기기	가. 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TLPR
	나. 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LPR
58.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11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12
	다. 기 타	FVG13
5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FVG21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FVG22
	다. 기 타	FVG23

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11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21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31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	ISM41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가. 자동차 기기류	MOB11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MOB21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 전장품)	MOB31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기기류	가. 텔레비전수상기	VDO11
	나. 영상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바. 편집기	
사. 디스플레이어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상 기자재</th> <th>기기부호</th> </tr> </thead> <tbody> <tr> <td>아. 라디오수신기</td> <td></td> <td>RAD11</td> </tr> <tr> <td rowspan="2">자. 앰프</td> <td>1) 앰프</td> <td rowspan="2">AMP11</td> </tr> <tr> <td>2) 앰프내장형스피커</td> </tr> <tr> <td>차. 리시버</td> <td></td> <td rowspan="4">AUD11</td> </tr> <tr> <td>카. 음성기록계</td> <td></td> </tr> <tr> <td>타. 음성플레이어</td> <td></td> </tr> <tr> <td>파. 오디오시스템</td> <td></td> </tr> <tr> <td>하. 전자악기</td> <td></td> <td rowspan="2">STB11</td> </tr> <tr> <td>거. 위성방송수신기</td> <td></td> </tr> <tr> <td>너. 비디오게임기구</td> <td></td> <td rowspan="2">VDO21</td> </tr> <tr> <td>더. 휴대폰</td> <td></td> </tr> <tr> <td>러. TV영상프로젝터</td> <td></td> <td rowspan="6">AUD21</td> </tr> <tr> <td rowspan="2">머. 음질조절기</td> <td>1) 음질조절기</td> </tr> <tr> <td>2) 이퀄라이저</td> </tr> <tr> <td>버. 오디오프로세서</td> <td></td> </tr> <tr> <td>서. 신호변환장치(AD/DA)</td> <td></td> </tr> <tr> <td>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td> <td></td> </tr> <tr> <td>저. 캡처서 게이트</td> <td></td> </tr> <tr> <td>쳐. 전자시계</td> <td></td> <td>WAT11</td> </tr> <tr> <td>커. CCTV 카메라</td> <td></td> <td rowspan="8">VDO31</td> </tr> <tr> <td>터. 영상전송기</td> <td></td> </tr> <tr> <td>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td> <td></td> </tr> <tr> <td>허. 영상기록계</td> <td></td> </tr> <tr> <td>고. A/V 신호수신기</td> <td></td> </tr> <tr> <td>노. 영상프로세서</td> <td></td> </tr> <tr> <td>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td> <td></td> </tr> <tr> <td>로. 터네티이블</td> <td></td> </tr> <tr> <td>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td> <td></td> <td>AVE99</td> </tr> <tr> <td rowspan="16">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td> <td rowspan="4">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3kW 이하인 것에 한함)</td> <td>1) 진공청소기·물흡입청소기</td> <td rowspan="4">CLN11</td> </tr> <tr> <td>2) 전기바닥청소기</td> </tr> <tr> <td>3) 전기표면세척기</td> </tr> <tr> <td>4) 스팀청소기</td> </tr> <tr> <td rowspan="5">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td> <td>1) 전기진조다리미</td> <td rowspan="5">IRN11</td> </tr> <tr> <td>2) 스팀다리미</td> </tr> <tr> <td>3) 바지 프레스기</td> </tr> <tr> <td>4) 주름펴기</td> </tr> <tr> <td>5) 다림질 프레스</td> </tr> <tr> <td rowspan="2">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td> <td>1) 전기식기세척기</td> <td rowspan="2">DSM11</td> </tr> <tr> <td>2) 전기식기건조기</td> </tr> <tr> <td rowspan="3">라. 주방용 전열기구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td> <td>1) 전기레인지</td> <td rowspan="3">MWO11</td> </tr> <tr> <td>2) 전기오븐기기</td> </tr> <tr> <td>3) 전기저치식그릴</td> </tr> </tbody> </table>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아. 라디오수신기		RAD11	자. 앰프	1) 앰프	AMP11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AUD11	카. 음성기록계		타.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STB11	거. 위성방송수신기		너. 비디오게임기구		VDO21	더. 휴대폰		러. TV영상프로젝터		AUD21	머.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AD/DA)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저. 캡처서 게이트		쳐. 전자시계		WAT11	커. CCTV 카메라		VDO31	터. 영상전송기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고. A/V 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서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로. 터네티이블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AVE99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3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진공청소기·물흡입청소기	CLN11	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1) 전기진조다리미	IRN11	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DSM11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 전열기구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1) 전기레인지	MWO11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저치식그릴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아. 라디오수신기		RAD11																																																																																											
자. 앰프	1) 앰프	AMP11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AUD11																																																																																											
카. 음성기록계																																																																																													
타.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STB11																																																																																											
거. 위성방송수신기																																																																																													
너. 비디오게임기구		VDO21																																																																																											
더. 휴대폰																																																																																													
러. TV영상프로젝터		AUD21																																																																																											
머.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AD/DA)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저. 캡처서 게이트																																																																																													
쳐. 전자시계		WAT11																																																																																											
커. CCTV 카메라		VDO31																																																																																											
터. 영상전송기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고. A/V 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서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로. 터네티이블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AVE99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3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진공청소기·물흡입청소기	CLN11																																																																																										
		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청소기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1) 전기진조다리미	IRN11																																																																																										
		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DSM11																																																																																										
		2) 전기식기건조기																																																																																											
	라. 주방용 전열기구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 방식)	1) 전기레인지	MWO11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저치식그릴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제품에만 적용)	4) 전기호브	WSM11			
	5) 전기곤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				
	12) 핫플레이트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하인 것)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HDR11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WRM11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 전동기기	1) 주서	KTC11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갈이				
	12) 전기강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함)	KTC99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전자파강도는 유	1) 전기밥솥	CUK11			
	2) 전기보온밥솥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기자재</th> <th>기기부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3">도가열(II)방식 제 품에만 적용)</td> <td>3) 전기주전자</td> <td rowspan="13">CUK99</td> </tr> <tr> <td>4) 전기냄비</td> </tr> <tr> <td>5) 전기물끓이기</td> </tr> <tr> <td>6) 전기약탕기</td> </tr> <tr> <td>7) 커피메이커</td> </tr> <tr> <td>8) 전기스팀쿠커</td> </tr> <tr> <td>9) 달걀조리기</td> </tr> <tr> <td>10) 우유가열기</td> </tr> <tr> <td>11) 젓병가열기</td> </tr> <tr> <td>12) 요구르트제조기</td> </tr> <tr> <td>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td> </tr> <tr> <td rowspan="6">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td> <td>1) 전기방석</td> <td rowspan="6">MAT11</td> </tr> <tr> <td>2) 전기요</td> </tr> <tr> <td>3) 전기매트</td> </tr> <tr> <td>4) 전기카펫</td> </tr> <tr> <td>5) 전기장판</td> </tr> <tr> <td>6) 전기침대</td> </tr> <tr> <td>카. 전기찜질기</td> <td>STW11</td> </tr> <tr> <td rowspan="2">타. 발 보온기</td> <td>1) 발보온기</td> <td rowspan="2">WRM21</td> </tr> <tr> <td>2) 전기손난로</td> </tr> <tr> <td rowspan="2">파. 전기온수기</td> <td>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td> <td rowspan="2">POT11</td> </tr> <tr> <td>2) 순간온수기</td> </tr> <tr> <td rowspan="4">하. 전기냉장·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td> <td>1) 전기냉장·냉동기기</td> <td rowspan="4">COL11</td> </tr> <tr> <td>2) 제빙기</td> </tr> <tr> <td>3) 아이스크림프리저</td> </tr> <tr> <td>4) 전기냉수기</td> </tr> <tr> <td>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td> <td>RAM11</td> </tr> <tr> <td>너. 가정용 전동세탁기</td> <td>SEM11</td> </tr> <tr> <td>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td> <td>CHG11</td> </tr> <tr> <td rowspan="3">러. 전기건조기</td> <td>1) 회전형 전기건조기</td> <td rowspan="3">HRY11</td> </tr> <tr> <td>2) 손건조기</td> </tr> <tr> <td>3) 전기건조기</td> </tr> <tr> <td rowspan="5">머. 전열기구</td> <td>1) 전기스토브</td> <td rowspan="5">STV11</td> </tr> <tr> <td>2) 전열보드</td> </tr> <tr> <td>3) 전기라디에이터</td> </tr> <tr> <td>4) 전기온풍기</td> </tr> <tr> <td>5) 축열식전기난방기</td> </tr> </tbody> </table>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도가열(II)방식 제 품에만 적용)	3) 전기주전자	CUK99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젓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	1) 전기방석	MAT11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STW11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WRM21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POT11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냉장·냉동기기	COL11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RAM11	너. 가정용 전동세탁기	SEM11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CHG11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HRY11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STV11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도가열(II)방식 제 품에만 적용)	3) 전기주전자	CUK99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젓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		1) 전기방석	MAT11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STW11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WRM21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POT11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냉장·냉동기기	COL11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RAM11																																																											
너. 가정용 전동세탁기	SEM11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CHG11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HRY11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STV11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b>대상 기자재</b>		<b>기기부호</b>		
버. 전기맞사지기		MSG11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 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	1) 냉방기	SCD11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1) 유체펌프	PUM11		
	2) 전기온수펌프			
저. <삭제>				
처.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SUN11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 <삭제>				
터. <삭제>				
퍼. <삭제>				
허. 전기욕조	1) 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 기포 발생기 포함)	BTH11		
	2) 반신(전신)욕조			
	3) 발욕조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AIR11		
노. 자동판매기		MHN11		
도. 팬, 레인지 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1) 선풍기	FAN11		
	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	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BTH21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현 행		개정안	비 고
<b>대상 기자재</b>		<b>기기부호</b>	
모. 가슴기		MST11	
보. <삭제>			
소. <삭제>			
오. 음식물처리기		DIS11	
조. <삭제>			
초. <삭제>			
코. <삭제>			
토. <삭제>			
포. <삭제>			
호. 전기용해기	1) 왁스용해기 2) 초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MHN21	
구. <삭제>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PET11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삭제>			
루. <삭제>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 기	1)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2)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SKT11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1) 전기이발용의자 2) 전동침대 3) 전기온열의자	CHR11	
수. <삭제>			
우. 전기온수매트	1) 전기보일러 2)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BOL11	
주. 구강청결기	1) 전동칫솔 2) 구강세척기	BRH11	
추. <삭제>			
쿠. <삭제>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2) 전기포충기	VRM11	
푸. 전기집진기		DUS11	
후. 착유기		MIL11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SEV11	
	2) 수하물보관기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CTN11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FAN21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	GAM11		
	2) 운전시물레이션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		GAM99	
	브. 전동형 홀스크린	CTN21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VRM21		
	2) 전기방향화산기			
으. <삭제>				
즈. 보플제거기		CLE11		
츠. 산소이온발생기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COW11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삭제>				
후. <삭제>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HOU99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전기드릴	ETL11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태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칸디깍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ETL88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ETL99	
디.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1) 전동자전거	MOV11		
	2) 전동보트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 형광등 등 조명기구류		3) 전동휠체어	MOV99	
		4) 전동스쿠터		
		5)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LIT11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겐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나.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압력이 1000V 이하의 것)	IVT11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압력이 1000V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LIG11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리스마스 휴리용 조명기구	LIT21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램프)			
6. 정보·사무 기기류	가. 컴퓨터류	IMC11		
	나. 컴퓨터 주변기기류	1) 입력장치류 (스캐너, 키보드 등)	IMA11	
		2) 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IMA21	
		3)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IMA31	
		4) 콘트롤러류	IMA41	
		5)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IMA51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1) 보드류	IMI11	
		2) 저장장치류	IMI21	
		3)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 포함)	IMI31	
		4) 콘트롤러류	IMI41	
		5)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IMI51	

현행		개정안	비고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라. 사무기기류	1) 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IMO11	
	2) 코팅기	IMO12	
	3) 지폐계수기	IMO13	
	4) 전자저울	IMO14	
	5) 금전등록기	IMO15	
	6) 어학실습기	IMO16	
	7) 문서세단기	IMO17	
	8) 천공기	IMO18	
	9) 채단기	IMO19	
	10) 제분기	IMO20	
	11) 전자질관 및 보드	IMO21	
	12) 동전계수기	IMO22	
	13) 전동타자기	IMO23	
	14) 전기소자기	IMO24	
	15) 교통카드충전기	IMO25	
	16) 번호표발행기	IMO26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		IMI61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IMDD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LIN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LPD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단말기기류	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A11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A12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카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 발신제어기, 착신전화기, 자동응답기 등)	A13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A15	
	마. 영상전화기	A16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트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A17	
	사.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A20	
	아.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A21	
	자.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A22	
	차.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결용 카드식 포함)	A23	
카.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A24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기자재</th> <th>기기부호</th> </tr> </thead> <tbody> <tr> <td>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td> <td>A32</td> </tr> <tr> <td>파. 모델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td> <td>A33</td> </tr> <tr> <td>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td> <td>A34</td> </tr> <tr> <td>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td> <td>A35</td> </tr> <tr> <td>너. 코덱</td> <td>A36</td> </tr> <tr> <td>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td> <td>A41</td> </tr> <tr> <td>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td> <td>A42</td> </tr> <tr> <td>머. 원격제어기기</td> <td>A45</td> </tr> <tr> <td>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td> <td>A51</td> </tr> <tr> <td>서. 회선장애 감시기기</td> <td>A52</td> </tr> <tr> <td>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델 등)</td> <td>A81</td> </tr> <tr> <td>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td> <td>A82</td> </tr> <tr> <td>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td> <td>A86</td> </tr> <tr> <td>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td> <td>A99</td> </tr> </tbody> </table>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파. 모델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A33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A35	너. 코덱	A36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A41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A42	머. 원격제어기기	A45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델 등)	A81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A82	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A86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A99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A32																																						
파. 모델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A33																																						
하.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A34																																						
거.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A35																																						
너. 코덱	A36																																						
더.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A41																																						
러.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A42																																						
머. 원격제어기기	A45																																						
버.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A51																																						
서. 회선장애 감시기기	A52																																						
어.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델 등)	A81																																						
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A82																																						
처.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A86																																						
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A99																																						
15. 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과적합성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td> <td>ELV11</td> </tr> <tr> <td>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td> <td>ELV21</td> </tr> <tr> <td>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td> <td>ELV31</td> </tr> <tr> <td>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td> <td>ELV41</td> </tr> </tbody> </table>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11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21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ELV31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ELV41																														
가.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11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ELV21																																						
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ELV31																																						
라.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ELV41																																						
16. 소방기기류	<table border="1"> <tbody> <tr><td>1) 누전경보기(수신부)</td><td>FIR1</td></tr> <tr><td>2) 가스누설경보기</td><td>FIR2</td></tr> <tr><td>3) 수신기</td><td>FIR3</td></tr> <tr><td>4) 증계기</td><td>FIR4</td></tr> <tr><td>5) 감지기</td><td>FIR5</td></tr> <tr><td>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td><td>FIR6</td></tr> <tr><td>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td><td>FIR7</td></tr> <tr><td>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td><td>FIR8</td></tr> <tr><td>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td><td>FIR9</td></tr> <tr><td>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td><td>FIR10</td></tr> <tr><td>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td><td>FIR11</td></tr> <tr><td>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탱퍼</td><td>FIR12</td></tr> <tr><td>13) 자동폐쇄장치</td><td>FIR13</td></tr> <tr><td>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td><td>FIR14</td></tr> <tr><td>15) 플랩탱퍼</td><td>FIR15</td></tr> <tr><td>16) 유도등</td><td>FIR16</td></tr> <tr><td>17) 비상조명등</td><td>FIR17</td></tr> <tr><td>18) 기타 소방기기류</td><td>FIR18</td></tr> </tbody> </table>	1) 누전경보기(수신부)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FIR2	3) 수신기	FIR3	4) 증계기	FIR4	5) 감지기	FIR5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	FIR8	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탱퍼	FIR12	13) 자동폐쇄장치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FIR14	15) 플랩탱퍼	FIR15	16) 유도등	FIR16	17) 비상조명등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FIR18		
1) 누전경보기(수신부)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FIR2																																						
3) 수신기	FIR3																																						
4) 증계기	FIR4																																						
5) 감지기	FIR5																																						
6) 주거용주방 자동소화장치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소화장치	FIR8																																						
9)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탱퍼	FIR12																																						
13) 자동폐쇄장치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FIR14																																						
15) 플랩탱퍼	FIR15																																						
16) 유도등	FIR16																																						
17) 비상조명등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FIR18																																						
17.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PWR11																																						
18. 전기자전거류	BIC																																						
19. 그밖에 제1호부터 제15호에 준하는 기기류	EX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2항관련)</p> <p>[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제3조제3항 관련)</p> <p>[별표 4] &lt;생략&gt;</p> <p>[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p> <p>1. &lt;생략&gt;</p> <p>2. 표시방법</p> <p>가.~다. &lt;생략&gt;</p> <p>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lt;생략&gt;</p> <p>6) 「<b>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b>」 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u>잘 보이는 곳에</u> 표시하여야 한다.</p>	<p>[별표 2] &lt;삭제&gt;</p> <p>[별표 3] &lt;삭제&gt;</p> <p>[별표 4] &lt;현행과 같음&gt;</p> <p>[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표시방법</p> <p>가.~다. &lt;현행과 같음&gt;</p> <p>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lt;생략&gt;</p> <p>6)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u>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u>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u>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u> 표시하여야 한다.</p>	<p>○ 제3조의 개정에 따라 별표 2, 3을 삭제</p> <p>○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입자로 확대 추진</p> <p>○ 제20조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팩스모듈, 완구용 모터를 장착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신, 선택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사항을 완제품에서 확인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내용</p>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6] <생략>				[별표 6] <현행과 같음>				○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  ○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대상기자재를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u>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u>형식기호 표시방법</u>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삭제>					
2. 제8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삭제>					
3. 형식기호 표시방법				<삭제>					
가. 형식에 관한 기호				1. 형식에 관한 기호					
구분	내용		형식기호	구분	내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45호, 제51호부터 제54호와 별표2 제9호의 대상기자재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2. ~ 4. <생략>				2. ~ 4. <생략>					
5. 방식	가. ~ 다. <생략>			5. 방식	가. ~ 다. <생략>				
	파.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1) 아날로그 방식	A		파.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아날로그 방식	A		
		2) 디지털방식	D			2) 디지털방식	D		
	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S		하.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 동기식	S		
2) 비동기식		AS	2) 비동기식	AS					
거. <생략>				거. <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6. 주파수	제3조제1항 [별표1] 해당 기자재 및 제3조제2항 [별표2] 미약전계 강도 무선기기	1) <생략>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 기자재	1) <생략>							
		2) <생략>				2) <생략>							
7. ~ 10. <생략>				7.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 및 별표2제9호 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비고> 1. <생략>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용도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 4. <생략>									
나.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진	진	채		
		자	도	용	격	파	송	신	신	신	신		
		재	경	환	자	식	수	의	구	별	력	식	널
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	○	○	○							
2. 무선방위 측정기		○	○	○	○	○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5. 단측파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진	진	채		
		자	도	용	격	파	송	신	신	신	신		
		재	경	환	자	식	수	의	구	별	력	식	널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	○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파 수	송·수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파 수	송·수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6.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	○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	○ 5호에서 분리	
	7.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	○				○				
	8.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		8. 네비텍스수신기	○	○	○	○								
	9.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9.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	○			○				
	1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	○	○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12.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	○	○		
	13.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	○	○		
	1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	○	○	○							
	15.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	○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	○	○	○							
	16. 네비텍스수신기	○	○	○	○							1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	○	○	○		○		○	○			
	1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	○	○	○							
	18. 위성비상위치지사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	○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0.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0.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21.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	○	○	○	○		○	○	○	○	○		○
												2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수	전	전	채	구분	항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수	전	전	채	
		자	도	용	격	사	파	신의	파	신의				파	신의	자	도	용	격	사	파	신의		
21.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 로봇트기기	○	○	○	○	○	○		○	○	23.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3호에서 분리  ○ 5호에서 분리  ○ 25호를 수정  ○ 29호를 분리  ○ 23호에서 분리 ○ 23호에서 분리          ○ 26호에서 분리          ○ 39호를 수정	
22.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	○		○	○	2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5.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	○		
24.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		○		26.	기상원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5.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7.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		
26.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28.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	○	○	○		
27.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29.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		
2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29.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	○	○	○	○	○	○	○	31.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1.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3.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2.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4.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5.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		
34.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6.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3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 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송·수 신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송·수 신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35.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8.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47호를 수정
36.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39.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39호를 분리
37.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47호를 분리
38.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 47호를 분리
39.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42.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		43.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1. 특정소출력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	○	○		○	○		○		44.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28호를 수정
42.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4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3.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	○		○	○				46.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47.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48.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6.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49.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4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	○		○		50.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	○		○	○		○	
48.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	○	○	○		○	○				51.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		○	○		○	
49.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	○	○		○	○	○	○	
5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		○		53.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	○	○		○	○	○	○	○ 42호를 분리
											54. USN용 무선기기	○	○	○	○		○	○	○	○	○ 42호를 분리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항목										구분	항목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파 수	송·수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기 재	용 도	사 용 환 경	합 격 자 식	방 파 수	주 파 수	송·수신 의 구 별	전 파 력	전 파 형 식	채 널	
5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	○	○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48호에서 분리 ○ 48호에서 분리
52.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	○		○	○		○		55. 코드없는 전화기	○	○	○	○		○	○	○	○	○	
5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	○	○	56.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	○		○	○	○			
54.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57.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	○	○		○	○	○			
55.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58.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	○	○	○		○	○				
											59.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	○	○		○	○	○			
											60.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6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	○	○		○	○	○			
											62.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		○			
											63.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뒤 쪽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회로도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서식에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p> <p>[별지 제6호 서식] 뒤 쪽(구비서류 작성방법)</p> <p>1. ~ 6. (생략)</p> <p>7. 기기부호(형식기호)</p> <p>- “<u>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u>”을 참고합니다.</p> <p>8. ~ 16. (생략)</p>	<p>-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u>보관</u>합니다.</p> <p>[별지 제6호 서식] 뒤 쪽(구비서류 작성방법)</p> <p>1. ~ 6. (생략)</p> <p>7. 기기부호(형식기호)</p> <p>- <u>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및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u>을 참고합니다.</p> <p>8. ~ 16. (생략)</p>	<p>○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p>